

【공고 2021-23】



2021 아산시와 삼성전자가 함께하는 <아산온궁오케스트라> 신규단원 공개모집 재공고

(재)아산문화재단에서는 2021 아산시와 삼성전자가 함께하는 아산온궁오케스트라의 신규단원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모집 기간 중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4월 20일

(재)아산문화재단이사장



1

모집요강

- 모집기간: 2021년 4월 20일(화) ~ 4월 30일(금) 18:00까지
- 모집인원: 총 6명(사회취약계층 6명)
- 지원자격: 아산시 관내 초등학교 3 ~ 6학년
- 모집분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 모집일정

일 시	구 분	비 고
4월 20일(화) ~ 4월 30일(금)	신규단원 모집 재공고 및 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
5월 3일(월)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지
5월 6일(목)	면접 심사	학부모, 자녀 함께 면접
5월 7일(금)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지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활동내용

- 활동기간: 2021년 5월 ~ 11월 교육 종료 시 까지
- 교육장소: 배방 온(溫) 생활문화센터(아산시 배방읍 복수동로 43)
- 교육시간: 매주 수, 금요일 16:30 ~ 19:30
- ※ 장소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과정 무상교육
- 1인 1악기 무상대여
- 다양한 연주활동 참여
- 차량운행 지원(노선에 따라 이용 가능)

3

접수방법

○ 모집기간: 2021년 4월 20일(화) ~ 4월 30일(금), 마감일 18:00까지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2. 보호자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초상이용 동의서
4. 취약계층 지원자의 경우 증빙서류(3, 4p 취약계층 범주 중 증빙서류 참고)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혹은 우편접수

○ 주 소: (우.31491) 충남 아산시 배방읍 복수동로 43,
온(溫) 생활문화센터 3층 사무실 아산온궁오케스트라 담당자 앞

4

모집대상

○ 아산시 관내 초등학교 3 ~ 6학년 사회취약계층 6명
- 취약계층 범주

구분	비고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조손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소년·소녀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가족증명서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재학증명서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보훈자의 자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재원확인 증명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 이용기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자치단체장 추천자	-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 취약계층 유형별 세부사항

※ 서류 발급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복지포(www.bokjiro.go.kr) 참고

구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2021년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 (단위: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기준중위소득</td> <td>1,827,831</td> <td>3,088,079</td> <td>3,983,950</td> <td>4,876,290</td> <td>5,757,373</td> <td>6,628,603</td> </tr> <tr> <td>생계급여</td> <td>548,349</td> <td>926,424</td> <td>1,195,185</td> <td>1,462,887</td> <td>1,727,212</td> <td>1,988,581</td> </tr> <tr> <td>의료급여</td> <td>731,132</td> <td>1,235,232</td> <td>1,593,580</td> <td>1,950,516</td> <td>2,302,949</td> <td>2,651,441</td> </tr> <tr> <td>주거급여</td> <td>822,524</td> <td>1,389,636</td> <td>1,792,778</td> <td>2,194,331</td> <td>2,590,818</td> <td>2,982,871</td> </tr> <tr> <td>교육급여</td> <td>913,916</td> <td>1,544,040</td> <td>1,991,975</td> <td>2,438,145</td> <td>2,878,687</td> <td>3,314,302</td> </tr> </tbody> </table>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확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조손 가정의 자녀	-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p>「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이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지원대상자는 여성 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 ※ 일반 모자가족(모가 세대주) 또는 부자가족(부가 세대주)과는 구분 필요
도서벽지 거주자	<p>「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 산간지역/낙도(落島)/수복지구(收復地區)/접적지구(接敵地區)/광산지구(鑛山地區)를 말함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자녀」
보훈자의 자녀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특수교육대상자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p>「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
학교장 추천자	<p>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추천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자치단체장 추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기관별 5명 이하(필수사항)

5**유의사항**

- 토, 일요일은 방문접수가 불가합니다.
- 우편접수시 마감일 도착 서류에 한해서만 접수됩니다.
- 방문접수 가능 시간: **월 ~ 금요일 09:00 ~ 18:00**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18:00시 접수분 까지만 유효합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누락, 미첨부 등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 모집정원을 다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파트별 인원 정원에 따라 희망 악기가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회 이상 결석 시 자동 탈퇴됩니다.(진단서 및 사유서 제출 허용)
- 문의: ☎ 041-540-2428, ☎ 041-541-2560